

입양 지원 (Adoption Assistance)

입양 지원은 적격한 현역 및 은퇴자들에게 입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입양 가족을 위한 지원

연금국의 지원 프로그램은 은퇴자, 생존 배우자 및 연금국 가입자에게 입양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 비용은 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 경비부터 입양 기관 및 변호사 비용까지 다양합니다.

이 보조금은 [Relief of Conscience 기금](#)에서 일부가 제공됩니다.

보조금 액수

입양 아동 1명당 \$6,500

자격요건

입양 시, 다음의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신청자는 미국 장로교 또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교회, 노회, 대회, 교단 기관 또는 제휴 단체*에서 사역하고 있거나 은퇴자 또는 생존 배우자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의료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은퇴 또는 유족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입양 자녀는 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휴 단체는 노인 주택 및 보육 시설, 대학, 캠프 및 컨퍼런스 센터가 포함됩니다.

보조금 신청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연금국(800-773-7752)(800-PRESPLAN)(TTY: 711)으로 연락 주십시오.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다음 문서를 연금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 입양:** 최종 입양 확정 판결 사본-
- **국제 입양:** 최종 입양 확정 판결 사본 및 아동의 여권 또는 아동을 본국에서 해외로 이동할 수 있는 서면 허가서 사본

추가 지원

입양보조금 신청자격이 있고 입양 비용이 사용 가능한 정부 세금 공제 및 입양 지원을 초과하여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자원과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입양비용에 대한 긴급 지원금은 연금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외 입양된 자녀를 위한 건강 검진

의료보험(Highmark Blue Cross Blue Shield) 가입자가 해외에서 입양할 경우, 해외 입양 아동에 대한 보건 필수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만 18세 이하 입양 자녀에게 제공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800-773-7752(800-PRESPLAN)(TTY: 711)로 연금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